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 설치 〉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14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7
1. 국내 내국인 면세점 운영 현황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철규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5. 30.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폐광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중심의 대체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폐광지역 여행객이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의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¹⁾.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폐광지역 여행객이 진흥지구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석탄광산이 폐광²⁾함에 따라 정부는 폐광지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95년)하고, 내국인 카지노 (주)강원랜드를

1)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철규의원안)이 제20대국회 및 제21대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2) 석탄산업 합리화정책 시행 이전에는 347개 석탄광이 있었으나, 폐광으로 인해 현재는 2개의 탄광만 운영되고 있음.

설립·운영하는 등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음.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기반시설 구축과 생활환경 개선, 각종 테마파크 조성 등과 같은 관광레저 사업에 집중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체산업 육성 효과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해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인구는 '88년 80만 5,152명에서 '23년 39만 8,668명으로 50%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폐광지역 인구변화]

(단위: 명)

구 분	합계	강원도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경북 (문경)
		소계	태백	삼척	영월	정선			
1988년	805,152	441,370	115,175	132,370	74,048	119,777	144,502	87,230	132,050
2023년	398,668	172,887	38,702	62,651	37,332	34,202	95,772	61,254	68,755
'88년 대비 '23년(%)	49.5	39.1	33.6	47.3	50.4	28.5	66.2	70.2	52.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현황('23.12.31 기준) 재인용

또한 최근 대한석탄공사가 노사합의로 2023년 전남 화순광업소, 2024년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삼척 도계광업소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기폐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은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공동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폐광지역에 내국인 지정면세점³⁾을 설치하여 폐광지역의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현재 국내 내국인 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운영되고 있음⁴⁾.

개정안과 같이 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면세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폐광지역의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여 특히 조기폐광에 따른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⁵⁾은 동법 제3조에서 열거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률에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폐광지역 면세점 조세특례를

3) 개정안과 같은 지정면세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간접세 일반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는 「관세법」에 근거한 보세판매장과는 구별됨

구분	보세판매장	제주도 내국인 지정면세점
근거	관세법 제19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종류	외교관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지정면세점
면세조세	간접세 일반	간접세 일반
이용자	외교관, 출국하는 내·외국인	제주도를 출도하는 내·외국인

4) 국내 내국인 면세점 운영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5)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15호)의 심사과정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7

※ 참고자료

1. 국내 내국인 면세점 운영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 (추진경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사업재원 확보 및 제주도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 도입('02.12월)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근거규정 마련 ('06년, 기존 법률 폐지 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현황) 제주도 내 공항·여객항과 제주 시내 등에서 면세점 운영 중

-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여행객의 범위는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해 출항하는 내·외국인'
- 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는 회당 미화 800달러, 연도별 6회로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을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